

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1998. 5. 2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있는 각종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① 각종 시설물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수업,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.

② 외부단체의 사용은 매 학기도중 평일은 불허하며 다만,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범위) 본교 각종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.

1. 강의실 및 세미나실
2. 체육관 및 부대시설
3. 체육장 (운동장 및 테니스장)

제4조(체육관 운영) 본교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(체육관운영 규정)로 정한다.

제5조(관리) 본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.

제6조(신청 및 승인) 학생, 교직원,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, 행사명, 행사기간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.

제7조(사용준수) 본교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 승인 목적 이외 사용금지
2.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3. 질서유지
4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8조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
1. 본교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2.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
3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

제9조(조기사용)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주민건강을 위하여 이른 아침(06:00~08:00) 본교 체육장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한다.

제10조(사용료) ① 시설물의 사용자가 본교 학생이거나 교직원일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, 다만, 외부단체 일때에는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변상)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